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· 운영 계획

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
- 설치 목적 : 상색초등학교 방범 및 화재예방, 시설안전관리(학교폭력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)

2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 · 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
○ 담당부서 : 상색초등학교

○ 책임관 : 교장 유미현 (☎) 031-582-4306

○ 운영담당자 : 행정실장 최승진 (☎) 031-582-4845

○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(주 · 야간) : 주간 – 교감 홍승완 (☎) 031-582-4306,
야간 – 당직근무자 김덕웅 (☎) 031-582-4845

3. 설치 · 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
시설물명	위 치	카메라 대수	성 능 (적외선, F3.8-9.5MM)	촬영범위
상색초등학교	정문	1	200만 화소	정문주변(학교외부)
	뒤주차장	1	200만 화소	본관뒷편 교직원주차장
	버스주차	1	200만 화소	통학버스주차장및학생대기장소
	서편학교 숲주변	1	200만 화소	정문~서편현관앞
	동편 현관 (도예실)	1	200만 화소	텃밭근처
	유치원 놀이터	1	200만 화소	본관동쪽뒷편유치원놀이터
	연못주변	1	200만 화소	본관과급식실건물사이연못부근
	실습지	1	200만 화소	연못및실습지가는통로
	식당뒷편	1	200만 화소	급식실 뒷쪽정원
	도예실 뒷편	2	200만 화소	황토 체험실 뒤편
	체육창고 뒷편	1	200만 화소	체육 창고 뒷편

4.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
○ 안내판 규격 : 가로30cm×세로40cm

CCTV 설치안내문

본 건물에 CCTV를 설치·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☐ **설치목적 : 방범 및 화재예방, 시설안전관리**
☐ **설치장소 : 학교내, 건물외부**
☐ **촬영범위 : 학교내, 건물외부**
☐ **촬영시간 : 24시간 연속 촬영 / 녹화**

관리책임자	학교장
연락처	031-582-4306

상색초등학교장

○ 부착장소 : 학교 정문 및 후문 출입구

5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
○ 정보주체는 상색초등학교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 ·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
○ 학교장은 제 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○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(정보통신망포함) 하여야 한다.

1. 범죄조사, 공소유지,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가.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

나. 제 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 될 우려가 큰 경우

다.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6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・관리・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
○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24시간 연속(움직임 감지 시 녹화)

○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: 촬영일로부터 30일

○ 영상정보의 보관・관리・삭제의 방법 :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, 자동 삭제

○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: 상색초등학교 당직실(통제구역)

7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・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
○ 열람장소 : 당직실(통제구역)

○ 열람 · 재생 장소 : 당직실(통제구역)

○ 출입통제 현황 :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담당자 지정 및 잠금장치(통제구역 지정 관리)
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(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)

구분	시간	모니터링 담당자(전담인력)	장소
주간	08:50 ~ 16:50	교 감	당직실(통제구역)
야간	16:50 ~ 08:50	당직근무자	

9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・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
○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관의 결재를 얻어 제3자에게 영상정보를 동영상 파일 또는 인쇄물로 제공할 수 있다.

가.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

나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
다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 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
마.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.의결을 거친 경우

바.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
1)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2)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
3)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○ 절차 및 방법 : 열람신청서 작성 및 허가 후 열람, 재생 가능

※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・운영 표준 가이드라인」에 따름

10. 기대되는 효과

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・운영을 통한 학교 내 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효과